
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박정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53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3.

발 의 자 : 박 정 · 이훈기 · 김태선
최혁진 · 문금주 · 박지원
송옥주 · 윤후덕 · 김병주
복기왕 · 허성무 · 김한규
김준혁 · 민병덕 · 유동수
김 윤 · 황명선 · 박해철
이용선 · 김원이 · 박은정
김종민 · 송재봉 · 김기표
이인영 · 김남근 · 이주희
안도걸 · 조인철 · 이병진
채현일 의원(3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, 인구절벽, 저성장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새로운 국가 임무의 정립이 필요함.

한편 2024년 기준 67개 법정기금은 자산 3,050조 원이고 여유자금은 1,400조 원 규모임. 그러나 여유자금의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국가재정의 잠재력이 사장되고 있음.

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혁신형 벤처에 의무 투자를 하게 한다면,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이 공급되어 청년창업, 고용확대, 지역균형, 산업 다변화, 수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.

이에 국가 신산업을 키우고 그 성과를 국민과 나눌 수 있도록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·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고자 함(안 제71조제1항 및 제2항).
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1조제1항 중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”를 “기금 여유자금 중 100분의 10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제2조제2호에 따른 벤처투자를 하거나,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,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야 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”를 “기금운용계획에 따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 ①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(이하 “기금관리주체”라 한다)는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</u>	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금 여유자금</u> <u>중 100분의 10을 그 기금운용</u> <u>계획에 따라 제2조제2호에 따</u> <u>른 벤처투자를 하거나, 제2조제</u> <u>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, 제7</u> <u>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기술</u> <u>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야 한</u> <u>다.</u>
② 기금관리주체가 <u>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</u>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·허가·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.	② ----- <u>기금운용계획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·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